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서

2019년 6월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조직 명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자 : 김 명환  
주소 :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담당자 : 최 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연락처 : 010-9067-9640  
총 31 쪽

##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1) 도급승인 대상
- 2) 도급금지 및 승인대상 안전보건 평가
- 3)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 4)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 5)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 6) 건설기계 원청 책임강화
- 7) 발주처 책임강화
- 8)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 2. 보호범위 확대

- 1)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직종
- 2)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실시방안
- 3) 안전보건조치 적용 내용
- 4)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전면적용과 별표 1 폐지
- 5) 배달 노동자 중개사업주 안전보건조치

## 3. 작업중지 명령

- 1) 동일작업 범위 명시
- 2) 작업중지 해제 절차와 심의위원회

## 4. 물질안전보건자료

- 1) 보고제도
- 2) 영업비밀 제한

## 5. 기타조항

- 대표이사 이사회 보고
- 산재신청 역학조사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 재해율 기준 산재 다발 사업장 공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진단 개선 계획 수립
-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 작업환경 측정 대상. 특수검진 대상
- 산업보건 분야 (특수건강진단 개선위원회, 산업보건의 직무)
- 무재해 운동 삭제

## 6. 기타 개정안 찬성의견

## 7. 추가 하위규정 개정 요구

# 시행령 입법예고안 민주노총 의견

## 1.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 1) 도급승인 대상작업 (시행령 51조) : 반대 및 대폭 확대

제51조(도급승인 대상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를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1) 반대 및 확대 요구 주요 내용

- 위험의 외주화 금지의 산안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하도급에 대한 제한과 규제 확대 취지를 반영하여 기간에 하청산재 다발 작업과 업무를 도급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여야 함
- 개정법 59조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은 ‘예시’ 규정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8조의 2, 고평법 제 19조의 2 등에서 하위법령에서 예시를 법 취지에 따라 확대 규정한 사례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의 2 감정노동 보호조치에서도 법 조문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에서는 ‘휴게시간의 연장, 건강장애 치료 및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음

(기 제출한 민주노총 법률원 의견서 참조)

- 노동부 입법예고안은 “염산, 황산, 불산, 질산 취급하는 설비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및 설비 내부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는 59조 개정 법 조문에서 <취급작업>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후퇴시키는 조항임. 이에 라인작업, 정비 수리 및 교체를 포함한 취급 작업 전반으로 되어야 함
- 화학물질 잔류 증빙하면 도급승인 대상에서 적용제외 규정 삭제 :

2013년 대림산단 폭발사고 등 다수 사례에서 잔류물질 제거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여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에 투입되었으나 폭발사고 발생. 잔류물질 제거 방식에 대한 문제였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작업허가서를 발급한 원청의 문제가 드러났음. 이에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 (2) 시행령 개정 대안

##### ○ 노동부 주장의 문제점

- 노동부는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의 기준 선정에 대해 ‘위험작업이라는 기준, 외주화가 산재다발의 원인이라는 증빙의 여부’ 등을 주요하게 제기해 왔음

- 구의역 사고조사위원회, 조선업 산업재해 조사위원회 등에서 외주화를 원인 및 대책으로 제시
- 3월 발표 공공기관 안전대책의 주요 대상에도 부합. 정책목표 실질 달성을 위한 법 개정필요
- 민주노총의 도급승인 요구 대상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험작업으로 규정되어 있음

○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별표 1

- 종략

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취급하는 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8. 방사선 취급 작업

9.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 10.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17.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 시행령 별표 2 <위험 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

- 종략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액화석유가스(LPG)·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32.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5.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 조선업의 족장 설치 등의 작업이 적용됨

[시행령 개정 대안]

1.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관제, 탑승, 승무, 역무, 보안검색, 소방 활동 업무,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안전운행시설(전기, 통신, 신호, 선로, 항공로,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

2. 전기사업의 발전, 송전, 변전, 배전부문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 정비, 긴급 복구업무

3. 선박건조수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구체적 작업 명시 여부는 검토 필요)

4.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무,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

5.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 보수, 철거 해체하거나 설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화학물질 취급 작업 (황산, 불산, 염산, 질산, TCE, TMT)

7.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의 인수, 제조, 저장, 공급시설의 운전 및 정비점검업무

8. 감염성 질환 관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9. 광산 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 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및 제조 공정

10. 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업무

③ 그 밖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정기적인 심의를 거치거나 긴급하게 결정한 작업

1. 최근 3년 동안 재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 및 작업

2. 최근 3년 동안 반복적인 산재사망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긴급하게 도급승인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작업

3. 산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를 결정한 업종 및 작업

### (3) 도급승인 대상 주요 작업의 근거

#### ① 철도, 도시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의 운전, 관제, 탑승, 승무, 역무, 보안검색, 소방 활동 업무,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안전운행시설(전기, 통신, 신호, 선로, 항공로,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 : 제 2의 구의역 김균 방지

- 2016년 5월 구의역 김균의 사망이후 구성된 서울시의 2개의 진상조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 시민대책위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가장 중요한 사고원인으로 외주화를 발표함.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 메트로 (현 서울교통공사)는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함.
- 철도, 지하철의 생명안전 업무는 직접 정규직 고용전환이 정부 정책이며, 2019년 공공기관 안전대책 발표 등 과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함. 이에 단기적인 정책만이 아니라, 궤도의 위험업무를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으로 확대하여야 함.
- 철도, 지하철의 안전운행시설(전기, 통신, 신호, 선로, 항공로, 승강기, 승강장 안전문)의 점검 및 설비 보수업무는 업무 종사 노동자와 시민안전에도 직결됨. 또한, 역무, 소방 활동 업무 등의 경우에도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생명안전 업무임

#### ② 전기사업의 발전, 송전, 변전, 배전부문 설비의 운전 및 설비의 점검, 정비, 긴급 복구업무 : 제2의 김용균 방지 및 한국전력 활선작업 노동자 사고 방지

-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사망을 통해 발전부문의 사고성 재해의 다발과 하청 산재사망의 집중이 드러났으며, 태안화력의 경우 도급에 더해 재하도급이 진행된 사실도 드러남
- 지난 5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산재사고 중 96.6%는 하청 노동자였고, 사망 노동자 21명은 전원 하청 노동자였음. 2016년 14조3천억의 영업이익이 전망되는 한전은 하청 노동자 산재발생이 원청 정규직의 39배임. 지난 5년 동안 총 710명이 한전 협력사에서 일하다 사망.
- 전기사업은 공공기관이 진행되는 사업으로 2019년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대책의 주요 대상임.
- 현재 태안화력 등 발전소는 원청 직접 고용 방식이 아니므로, 공공기관 안전대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도급승인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완결되어야 함.

#### ③ 선박건조수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직무 명시 여부는 검토 필요) : 조선 하청 산재

- 최근 10년 동안 조선업 산업재해는 건설업보다 사망 만인률 높음. (10년간 사고사망 만인률은 조선업 1.68, 건설업 1.58임).
- 2006년 이후 10년 동안 조선업 사고사망자 307명 중 약 80%인 243명이 하청 노동자
- 조선 하청 산재는 동일 고정 사업장에서 지속 반복 발생. 사업장 안전관리 심각성 높음
-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구성 대책 발표 이후 노동부 2017년 11월 <조선업 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발족.

- 당시 조사에서 삼성중공업 137개 사내 협력업체 중 124개 업체가 복수의 재하도급. 1개 업체가 25개의 업체에 재하도급 사례도 밝혀짐. 재하도급 기간도 평균 5개월에서 7개월, 1년이상도 상당한 비중으로 조사됨. 재 하도급이 일시, 집중시기 활용이 아니라. 일상적 관행적 형태로 활용되고 있음이 드러남.
- 6개월 여의 조사결과 하청 산재 다발의 대책으로 하도급 관리와 재하도급 금지를 가장 우선적인 조치로 노동부에 권고 함. 그러나, 이행되지 않음. 조선업 현장 업무를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여,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함

[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 사고조사 보고서 발췌 ]

- 본 조선업 중대재해 조사위원회는 조선업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단계 재하도급 구조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단계 하도급의 엄격한 제한 이유 : “ 현장에서 작업인원에 대한 정확한 관리,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혼재작업 시 체계적인 공정관리,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에도 시간이 걸리고 중대재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았다”
- 다단계 하도급 제한 방안 : <건설산업기본법>처럼 <조선산업기본법> 등을 통해 현장에서의 재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
- 조선산업기본법 제정 등은 관계부처나 관련 산업계에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두거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라도 제한방안을 두어야 한다. 다단계 하도급은 조사위원회에서 발견한 중대재해의 근원적 원인이기 때문이다.
- 중략-

○ 조선업 중대재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1) 다단계 재하도급의 원칙적 금지와 필요시 제한적 허용

조선업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재수급인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조선업에서 재하도급은 노동자 중대재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 (2) 무리한 공정진행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3) 조선업 안전관리 법 제도 개선
- (4) 원 하청 노동자의 차별을 줄이는 방안 모색
- (5) 조사위가 제안하는 개선안을 추진할 기구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도급승인 대상에 “조선업 도급작업” 을 포함 시키고 도급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도급 승인 신청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재하도급임이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 도급을 불승인 조치하고 발판 설치작업 등 추락이나 전도 위험이 따르는 일부 특수직종 작업은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 1차 도급업체만 허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선적으로 조선하청 산재가 다발하는 업무인 족장사고는 유해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되어있는 비계의 조립해체 변경 작업에 해당되므로, 도급승인 대상으로 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함.

④ 원자력 안전법 제2조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업무, 방사선 투과 검사 업무

-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원자력 발전소의 하도급 제한과 안전보건강화 명시되어 있음.

- 고위험 작업이나, 화학물질 관리법에도 미 포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보건조치 외에 일부 적용제외 대상임. 그럼에도 유해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위험방지가 특별히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되어있음.
- 원전의 방사선 관리등 운영인력의 37%가 하청 노동자이고, 최근 5년간 원전사고 81건중 71건은 하청 노동자 사고임. 이중 사망사고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으며, 방사선 피폭은 일반인의 14배, 정규직 노동자의 10배에 달함. 그러나, 울산, 경주에서 발생한 두 번의 강도 높은 지진에서 하청 노동자는 지진경보 알림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음
- 2011년 울산 조선업 비파괴 검사 노동자 직업병 사망, 2013년 녹산 공단 방사선 누출 등 위험사례가 끊임없이 발생. 원자력 안전법에서 방사선 취급업무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원청의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음.

### ⑤ 화학물질 취급 작업 (황산, 불산, 염산, 질산, TCE, TMT)

- 법에서는 <취급 작업> 규정. 시행령은 취급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으로 도급승인 대상 축소
- 4개 화학물질(황산, 불산, 염산, 질산)로 제한, 노동부 추산 1,800개 사업장이나. 설비 개조, 분해, 해체 등의 작업으로 다시 제한하여. 실제 대상은 매우 협소
- 법령에 화학물질 취급 업무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업무를 설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일부 업무로 한정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적용대상을 협소화 시키는 것임.
-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황산, 불산, 염산, 질산은 급성 독성, 발암성 등 위험도가 높은 화학물질임. 반도체 공장의 세정작업,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등 라인작업, 일상적 수리 정비업무의 위험성이 수차례 확인된 바 있으나 적용제외
- 최근에는 거의 협력업체(사내외 도급/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승인 대상에 “라인 내 설비”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지보수 및 세정, 정비” 업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이에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 작업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취급 작업> 으로 명시되어야 하청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음

### ⑥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석유공급사업의 인수,제조,저장,공급시설의 운전및 정비점검업무

- 가스, 석유 사업은 사고가 발생하며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방치되어 왔음. 가스, 난방등 공공부문의 안전조치가 무차별적으로 하도급으로 진행되면서,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분야로 제기됨.
- 운전 및 정비 점검업무가 도급 위탁이 만연하여 하청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모두 위협하고 있음

### ⑦ 감염성 질환 관련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 2015년 메르스 사태 발생 시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는 하청고용문제였음. 당시 확진 판정중의 가장 많은 직종이 간병업무 였으며, 응급환자 이송, 전산장비 점검 등 다양한 하청 고용 노동자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예방조치가 전혀 진행되지 않으면서, 확산됨. 이는 감염성 질환의 경우 고용형태와는 무관하게 확산됨에도 현재의 관리체계가 전혀 현실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

- 또한, HIV를 비롯한 다양한 질환과 중환자실 등에서 나오는 각종 사용물에 대한 청소 노동자의 노출도 취약한 상태임.
-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다양한 업무에 대한 도급승인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⑧ 광산 안전법 적용 사업 (광업중 광물의 채광, 채굴, 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 및 제조 공정

- 채굴 업무 등이 고 위험 업종임은 주지의 사실임. 기존에 사양 산업이라는 주장으로 방치되어 왔음
- 광산업의 경우 채광, 채굴 업무등 고위험 업무를 하도급을 남발하여 하청 노동자만 투입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음

⑨ 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설치, 상승, 해체 업무

- 타워크레인의 설치, 상승, 해체작업이 등록제로 개정되고, 원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됨.
- 도급승인 대상 업무로 하여 도급계약 단계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4) 잔류물질 제거 시 도급승인 대상 적용제외 : 삭제

- 시행령은 보수 해체 작업등이 사업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고, 화학물질 폭발사고는 대부분 잔류물질이 없다고 측정되어 작업하다가 발생. 2013년 대림 사일로 폭발사고의 경우 잔류물질 제거로 작업 허가서 발급한 상황에서 대형 폭발사고 발생
- 또한, 법령의 위임도 없이 해당 화학물질 제거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적용제외하고 있음. 화학설비 개조, 보수작업등이 진행되는 화학 산단의 경우 화학물질 제거 (피지작업)과 설비 보수작업은 하나의 업체에 하도급 되고 있음. 이에 잔류물질 제거와 보수해체 작업을 분리하여 도급승인 대상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이는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동일한 조항으로 도급신고를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정착이 불가능하여 도급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동일함.

#### (5) 정기적인 도급승인 대상의 확대

- 산업 전반적으로 외주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기적으로 도급승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3년을 기준으로 재해율이 높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적 되었던 업무에 대해 산재예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심의하여 도급승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 도급금지 및 승인대상 안전보건 평가 등

- “일시 간헐적 작업” “전문적이고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 구체화 명시

- 일시 작업의 경우에는 파견근로에서도 그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계속 문제가 된 바 있음. 초 단시간 근로등과 같이 주당 15시간의 근무 등으로 명시적 제한 규정이 필요함.
- 간헐 작업의 경우도 명시적 규정이 없으면 각종 수리 정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도급납용 가능성이 높음.
- 화학 산업의 플랜트 설비 정비작업은 기업별 공정별로는 간헐적 업무일 수 있으나, 작업에 투입되는 노동자는 간헐작업을 공정별로 나누어 계속 투입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됨.

○ 전문적 기술과 필수 불가결한 경우

- 전문적 기술과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 대해 기업이 임의적 해석으로 도급금지 조항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농후함. 이에 논의과정에서 검토되었던 바 대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야 함.
- 도급 대상 업무의 전문적 기술이 관련법에 의해 전문업체가 하도록 지정되어 있을 것
- 외국기업과의 계약 체결 등이 되어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필수 불가결한 경우를 특정한 경우로 열거 제한 명시해야 함

○ 도급 승인 심의 요건 :

- 위험의 외주화 사례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안전보건조치가 매뉴얼화 되어 있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 등에서 무력화 되어 사고다발로 이어진 것임.
- 하도급 계약 시 적정 하도급 금액 보장 및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및 비율,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인력 및 운영계획, 도급승인 대상 작업의 적정 인력 보장, 하도급 공정의 안전보건관리 설비 및 점검 계획 등 추가 되어야 함

3) **도급금지 및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조치(시행령 54조) :**

**일부 조항 삭제 및 (시행령 별표1 연동하여 삭제)**

제54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법 제63조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사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 ‘사무직’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도 정의가 불분명함.
-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이 조항을 들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시설관리 등의 도급계약을 맺고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4명사건을 비롯하여 금융 보험업 등 각종 서비스 산업의 설비 보수업무가 도급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사무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악용하여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다발할 것임.

- 실례로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대상 사업으로 규정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사업장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는 규정을 들어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도급의 규정 논의 당시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소, 시설관리, 급식, 조정’ 등 명칭이나 계약형태와 무관하게 안전조치, 보건조치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 개정의 취지가 논의되고 개정된 바 있음
- 이에 입법예고안의 조문은 법 개정취지를 크게 후퇴한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 또한, 산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5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적용제외 규정으로 5장 2절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적용제외하고 있는 것도 삭제되어야 함.

#### 4)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안전보건규칙임을 시행규칙 등에 명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규정을 각각 법 38조, 법 39조에 하고 있으나, 개정법 63조와 연계되지 않아, 현장과 사업주의 혼란이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규칙 29조 3항에 도급인의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안전보건 규칙의 내용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개정 산안법에서도 시행규칙에 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개정 대안]

개정 대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조)

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 5)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시행령 11조/ 시행규칙 98조) :

##### 조문명칭 명확화와 시행규칙 통합 및 대상 추가 확대

(1) 시행령 11조 제목의 변경 :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 법령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를 구분하여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 를 시행령 11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령 11조의 명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 로 되어 일선 현장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도 22개 위험장소만 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안전보건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에게도 동일한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는 이후 현장적용과 법 적용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임
- 이에 조문의 명칭을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 로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2)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통합 명시

-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22개 위험장소가 분리되어 있어, 현장과 안전보건의 각 주체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법률적 정합성의 문제에서 벗어나, 22개 위험장소를 통합 명시하는 방안이 필요함.

(3) 도급인이 지정 제공하는 장소의 추가 확대

- 입법예고안의 22개 위험장소는 장소에 따르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와 연동되어 있어, 확대되어 나가는 하청 고용형태에 따르는 구체적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사각지대가 지속 발생함. 이에 산재사망이 다발하는 구체적 사고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추가확대가 필요함.

가. 방문 서비스, 이동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 현행의 규정은 건설, 제조, 조선등 고정 사업장을 전제로 규정되어 왔음. 이에 에어컨, 통신케이블 등의 설치수리, 건물 외벽 도색 및 시설수리등 옥상작업, 지붕작업 추락사망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왔음
- 삼성에어컨 설치 수리 노동자의 연속적 추락사망 발생. 설치 수리 작업을 하는 고객의 집은 고정 사업장이 아니므로 추락방지를 할 수 있는 안전난간, 안전대등 추락방지조치는 실질 적용이 불가함. 안전한 고소작업을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기구를 통한 작업이 필요하나, 삼성 원청은 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전가하여, 사실상 아무런 조치 없이 추락사망 반복. 노동조합의 강력한 대응으로 원청인 삼성이 대여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함. 그러나, LG 등 다른 업체는 여전히 동일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현행의 22개 위험장소는 장소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안전조치, 보건조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행의 규정으로는 추락방지 조치 규정과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 조치 규정이 다르고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내용이 적용이 불가능함
- 수도점검 등 맨홀 작업의 경우에도 질식 위험도가 높고, 사고 다발. 대부분의 지자체나 공기업의 도급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각지대에 방치. 현행 예고에 명시되어 있는 추락위험장소는 엘리베이터 홀 등으로 건설현장 혹은 제조업 사업장으로만 한정 적용되는 현실로 귀결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동시적인 개정이 필요함.

**[개정 대안]**

<p><u>시행령 개정 안</u></p> <p>1안) 추락 방지를 위해 차량용 하역 운반기계기구, 이삿짐용 리프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작업</p> <p>2안) 2미터 이상의 높이나 깊이에서 진행되는 청소, 수리, 도색, 점검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p> <p><u>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안</u></p> <p>제 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p> <p>00 조 : 사업주는 작업 발판, 안전대, 안전난간 등의 추락방지 설치가 곤란한 장소인 경우에는 차량용 하역운반기계기구, 이삿짐용 리프트 등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p>
--

나. 중독성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화학물질 제조, 철거, 보수 작업 등

- 22개 위험장소에는 화학물질 관련 별표 7에 따른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정비 보수작업으로 되어 있음
- 메탄올 중독 사고는 대기업 원청의 사외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청의 책임 부여가 되지 않음, 예고안의 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광주 남영전구의 수은중독처럼 철거, 해체작업의 경우가 누락되고 있음

#### [개정 대안]

- 화학물질 제조, 사용, 운반, 설비의 개조, 보수, 철거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조항 통합 : 22개 위험장소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 하여. 사업주나 노동자가 16개 장소로만 이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함. 현행 규정대로 통합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6) 건설기계 원청책임강화 (시행령 67조/ 시행규칙 98조) : 27개 건설기계 전면 적용

시행령 제67조(기계·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타워크레인
2. 건설용 리프트
3. 향타기 및 향발기

시행규칙 제98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76조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7조에 따른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1. 작업시작 전 기계·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
2.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3. 작업자가 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영 제67조제1호 및 제3호에 한함)
4. 그 밖에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5. 기계·기구 등의 결함, 작업방법과 절차 미 준수,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 중지 조치

#### ○ 건설기계 27개 기종 중 4개만 적용.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등 사고다발 기계는 제외

- 건설업 산재사망 중 건설기계 장비에 의한 사망이 약 20%. 2016년 사고사망자 중 113명으로 22.6% 증가 추세임- 2016년 건설업 업무상 사고 사망자 499명 중 건설기계·장비 사망자는 113명으로 22.6%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원인은 기계적인 결함(66건·9.5%)보다는 관리적 원인(406

건 · 58.6%)과 교육적 원인(221건 · 31.9%)이 압도적으로 많음.

- 특히, 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대(차),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등 5대 건설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가 64.5%. 최근 5년간(2011~2015년) 5대 건설기계 사망 노동자 수는 693명. 모든 건설기계(27개 기종)로 범위를 넓히면 이 수치는 2539명까지 늘어남. 이 기간 전체 사망자 수(5300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
- 건설기계 장비는 공정에 맞추어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현장에 투입됨. 건설기계 조종사가 기계장비 인근에서 벌어지는 다른 공정까지 통제할 수 없음. 소속된 회사도 다르고, 지휘권이 있지도 않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지시를 다른 노동자들이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결국, 건설기계 장비가 투입되어 진행되는 공정은 여러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원청 밖에 없음
- 그러나,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강화 대상은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향발기만 적용하고 있음. 사고가 다발하는 건설기계는 오히려 원청 책임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 ○ 노동부의 법률 오독

- 건설현장 기계장비는 [원청-(도급)-하청-(임대)-건설기계] 고용형태를 갖고 있어, 현장에서 예방관리 책임과 처벌이 불분명
- 통상 하청 전문건설업체와 장비 임대계약형식을 띄면서 운송기사도 투입되어 노무비를 포함한 장비 임대료를 지급 받고 있음
- 현행 개정 산안법 제63조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기계 조종사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지위에 해당됨. 따라서 이들은 개정 산안법 제 63조에 의해서는 원청의 안전조치 등의 의무대상이 아니게 됨.
- 27개 건설기계 전면 적용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7) 발주처 책임 강화 (시행령 67조) : 반대 (공공기관 전면 적용 및 확대)

시행령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 2019년 3월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 대책을 발표했고, 한국전력도 그 대상기관임. 또한 공공공사인 경우에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발주처 책임강화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한국전력은 올해 배전공사에만 1조 2천억을 발주하는 전기 공사의 유일한 발주처임. 개정 산안법 제2조 정의에 11항 건설공사에 “전기 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가 포함되어 한국전력도 업종으로는 적용 대상임.
- 한전은 배전공사에서 업체별 발주를 하는 총가공사와 8,000만원미만의 단가 공사 방식으로 발주를 하고 있음. 그러나, 한전은 배전공사의 외선전기노동자 작업이 추락, 감전등 중대재해가 다발하므로, 산업안전관리비에 있어 업체별로 단가공사 합산 방식을 적용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적용하고 있음.

- 한전공사의 경우 현재 한전이 발주처로서 공사 개입과 감독을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기본계획에서 기간, 비용, 공법 등에 대해 적정한 발주처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고, 공사통제와 감독만 진행되고 있음. 이에 활선공법등 위험공법의 문제가 제기되어 오기도 했고, 한전의 활선작업 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장에서 발주처로서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한전이 발주처 책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이에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를 전면 적용하거나,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산정에서 단가합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대안]**

시행령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8)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시행령 70조) : 수정 (도소매업 전면적용/ 가맹점수 기준 확대)**

업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의 가맹본부를 말한다.

1. 대분류가 “외식” 인 업종
2. 대분류가 “도소매” 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 인 업종

○ 예외로 할 수 있는 업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아래 업종이 하위령에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괄호는 중분류)

- 외식(한식, 분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패스트푸드, 치킨, 피자,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커피, 주점, 기타 외식)
- 도소매(편의점, 의류패션, 화장품, 농수산물, (건강)식품, 종합소매점, 기타도소매)
- 서비스(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유아 관련(교육외), 부동산 중개, 임대, 숙박, 이미용, 스포츠 관련, 자동차 관련, PC방, 오락, 배달, 안경, 세탁, 이사, 운송, 반려동물 관련, 약국, 인력파견, 기타 서비스 등)

- 외식업의 경우에는 자재, 설비, 작업 방법 등에 있어 당연히 전면 적용되어야 함.
- 편의점, 화장품등 도소매업의 경우도 제품 진열 및 운반 등에 있어 근 골격계 질환 예방의무, 감정노동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본부차원의 의무 부여가 필요함.
- 기타 서비스업에서 이. 미용, 자동차 정비, 세탁, 이사, 운송 등의 경우 가맹본부에서 특정한 화학물질 제품, 설비, 운송설비 등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맹본부의 안전보건의무가 부여될 필요가 있음. 이 미용의 경우 관련 조사와 연구보고도 있음.

## ○ 가맹점 사업자 수 선출방식 엄격한 기준 제시

- 맥도날드 등 직영점이 많은 프랜차이즈 사업장(맥도날드 가맹점 128개, 버거킹 가맹점 72개)은 포함 안 됨. 직영점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받지 않음. 가맹점 사업장 수 기준에 직영점 숫자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방식 적용 제안함

## ○ 노동자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구체화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가맹점 유해 . 위험요인 개선 활동,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대한 일정의무 부여
- 가맹사업자에게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제공 필요

# 2 보호범위 확대

## 1) 특수고용 (시행령 68조) : 화물운송, 예술등 전면 확대, 주로 하나의 사업 문구 삭제

### 가. 개요

-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료 징수의 문제가 있어 제한적인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보건 조치는 현장에서 일반 포괄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폭넓게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화물운송사업 종사 노동자, 예술 노동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보호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동일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전속성 여부를 따져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사업장 전체의 재해예방을 하는 사업주로서도 실익이 없음
-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전면 적용되어야 하며, 감정노동 보호조치도 직종별 적용조항의 차이를 두는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전면 적용되어야 함.

### 나. 직종 확대

## ○ 직종 대상 중 대리운전, 퀵 서비스 등에 <주로 하나의 사업> 에 문구 삭제

- 산재보험 적용 문구를 그대로 원용하고 있음
-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 등은 산재보험 특수고용 특례와 중소기업주 특례의 2중 적용을 받고 있어, 산재보험 문구에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주로 하나의 사업> 문구가 명시됨
- 산재예방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예방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동 문구는 삭제되어야 함.

## ○ 적용대상 직종 전면 확대

### ① 화물운송 사업 종사 노동자

- 화물운송 사업에서 도로위의 중대재해를 비롯하여 물류센터의 집하, 상차 하차과정에서의 위험도가 높아 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부여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제철소, 화학 산단, 자동차 등 고정 사업장에서 원청의 지시에 따라 추가 작업 진행하다 사고 발생 다발
- 2018년 8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전수조사 결과 응답자 11,670명중 1개 회사로부터 고정 물량을 받는 비율이 82.9%에 달함
-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이 법제화되었음. 이는 화물자동차의 사고위험이 높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으로 도입된 것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분야 모두 화물운송이 직종확대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음

### ② 예술 노동자

- 영화, 드라마 촬영현장과 극 예술 공연에서 미술작업, 셋트 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와 동일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종 설비위험으로 사고가 지속 발생. 그러나, 방송영화산업의 파편화된 고용구조로 방치되어 왔음. 이에 최소한의 안전보건조치가 전면 적용되어야 함
- 각종 무용 공연이나, 전시 등에서도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산재보험의 예술인 적용은 보험료 징수 등의 문제로 중소기업주 특례로 되어 있으나, 실상에서는 별도의 재단 등에서 관리하여 적용하고 있음

### ③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미용업 등

- 각종 장거리 여객운송 버스뿐만 아니라, 마을버스, 학원 버스, 어린이집 버스 등이 지입차주 형식으로 운영되면서,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행되지 않아 사고 위험도가 높음
- 차량 입고지, 정비 사업소 등에서 미끄러짐 사고, 끼임사고, 협착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가 시행되지 않음
- 미용업 등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과 위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됨. 그러나 미용업 등의 경우 전국의 지점 형태로 진행되면서, 고용규모와 매출 수준이 높음에도 특수고용 형태로 안전보건조치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보호가 필요함. 세탁업의 경우에도 전국적 체인 형태로 진행되면서, 세탁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제기되어 왔음

## 2) 안전보건 교육 대상 특수고용노동자 (시행령 69조)

### (1) 채용 시 교육 진행의 문제점 (시행규칙 99조)

- 안전교육은 정기 안전교육으로 진행이 필요함. 상대적으로 단기 고용이 많아 채용 시 교육으로 진

행시 매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현실로 실질 운영에 어려움 발생

-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변질되어 채용 시 교육처럼 진행되어, 별도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이 있어야 취업이 되는 형태로 변질되었음. 교육비용도 노동자에게 전액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임.
- 현재 특수고용노동자 교육은 위탁기관에 위탁도 가능하게 되어있어. 입법예고안대로 진행된다면,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무관한 형식적인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비용만 노동자에게 전가하게 될 우려가 큼
- 안전교육 실시가 사업주의 비용으로 진행되고, 현장의 실질적 내용이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대책이 필요함.

(2) 적용대상 9개 직종 중 4개 직종이 교육적용제외

- 금융 보험업, 교육서비스업은 현행의 시행령 별표 1적용제의 규정에서 삭제하여, 전면 적용해야 함.
-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업 종사 노동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보건 분야의 산재위험이 높으며, 감정노동을 비롯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아울러 감정노동 교육은 전 사업장 적용이므로, 현행의 안전교육 적용제의 규정과 사업장 현실에서는 실제 운영에서 충돌되거나, 실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함
- 근거와 기준 없이 안전교육 적용제의 대상을 규정한 산안법 시행령 별표를 전면 개정해야 함.

3) 안전보건조치 전면 적용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직종	문제점과 현장 실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1. 사무실에서의 재해예방: 휴게시설의 설치, 공기정화설비 가동 등 공기질 관리 및 오염물질 관리,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시 휴식시간 부여 등 적절한 조치 의무 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법 제41조에 따른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의 제공 및 관련 교육 실시
민주노총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칙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필요</li> <li>- 사무실에서 미끄러짐 사고, 통로의 적재물에 따른 사고, 채광미 조명과 조도의 문제 있음. 출입구 및 출입문 비상구 유지, 경보용 설비, 통로의 조명, 통로의 설치 등이 모두 필요한 조치임. 구급용구의 비치도 필요함 (종이나 교구에 의한 베임, 찢림 사고 다발)</li> <li>- 옥외 이동작업이 많아 악천후 작업장요에 대한 호소, 폭염 한파시 작업에 대한 휴게시설, 휴식 등 보호조치 요구 높음</li> <li>- 신용카드 모집인 등의 경우 의자의 비치 요구 있음</li> <li>-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 중량물의 제한, 중량의 표시 등</li> <li>- 장시간 노동이 많아 직무스트레스 조항의 적용도 필요</li> <li>- 감정노동 보호조치는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전면 적용이 필요함</li> </ul>

건설기계운전원  
(영 제68조제2호)

1. 작업장 안전·보건 관련: 전도방지, 작업장의 청결 유지·관리, 분진의 흡탈립 방지, 안전난간 설치, 등
2. 보호구 관련: 보호구의 지급·관리
3.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관련: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방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기계·기구 등 사용 금지, 악천후 및 강풍시 작업 중지,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4.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추락위험 장소 등에서의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방지,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조명 유지, 붕괴·낙하에 의한 위험방지, 터널 등 건설작업시 붕괴예방 등을 위한 계측장치의 설치 등
5. 비계 관련: 비계의 재료, 최대적재하중, 조립·해체·변경시 준수사항, 비계 점검·보수 등
6.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관련: 크레인 등에 근로자의 탑승 제한,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조치,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설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위치 이탈시 필요한 조치 등
7. 양중기 관련: 정격하중 등의 표시·초과 금지, 방호장치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정, 크레인 설치·조립 등의 작업시 조치사항, 크레인 작업 시의 준수사항 및 조치, 경사각의 제한, 권과방지장치 설치 등 조치,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등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관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전도·접촉 등의 방지 조치, 화물적재 시의 조치,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시의 준수사항, 전조등 및 후미등 미구비 지게차 사용금지, 화물을 내리는 작업시 쌓여 있는 화물의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등
9. 건설기계 등 관련: 차량계 건설기계에 전조등의 설치, 암석이 떨어지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에 헤드가드 설치,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접촉 등의 방지, 승차석 외 탑승금지, 향타기 및 향받기 조립 시 점검·도피 방지
10. 콘크리트 작업 관련: 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준수사항,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등
11.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관련: 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토석붕괴 위험의 방지 조치,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터널굴착 작업시 인화성가스에 의한 폭발예방을 위한 가스제거 조치 등 안전조치, 교량 설치 등 작업시 준수사항, 채석작업시 지반붕괴 위험방지, 굴착기계 등의 후진 등시 유도자 배치, 공사용 가설도로 설치시 준수사항, 철골조립 시의 위험방지 등
12. 해체작업시의 위험방지 관련 기상상태에 따른 해체작업중지
13.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관련 중량물 취급시 하역운반기계 등의 사용,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준수사항
14.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관련: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 사용금지,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 중간에서 화물 빼내기 금지, 하역작업장의 조치기준, 화물적재시 준수사항,
15.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6.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관련: 궤도작업차량 이용한 궤도 관련 작업 자재 운반 등 작업 시 자재의 붕괴·낙하 방지, 제동장치의 구비,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작업 시 대피공간의 확보 등

<p>민주노총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조치는 전면 적용제외 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li> <li>- 2015년 광주 남영전구 수은중독에서 해체 및 이송작업에 투입되었던 덤프 운전 노동자 수은 중독, 굴삭기와 덤프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투입되어 분진과 석면 노출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직종임.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도 되지 않고 있음. 덤프트럭의 경우 제철소 슬러지 이송, 각종 폐기물 이송작업에 종사하고 있음. 도로 포장작업, 콘크리트 작업등에 종사하는 건설기계도 분진, 석면, 화학물질등 노출이 있음. 보건조치의 대부분이 해당사항이 됨.</li> <li>- 폭염에 대한 건설노동자의 기본적인 물, 그늘막, 휴게 등의 기본 조치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것임.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 시 냉 음료나 식염 같은 기본적인 것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li> <li>- 휴게시설, 분진작업과 폐기물 선별작업등에 종사하므로 세척시설 필요. 운송작업이 야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다발하여 수면장소도 요구되며, 구급용구의 비치도 필요함</li> <li>- 제조업 공장,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기 작업등이 적용제외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만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님. 지게차의 경우 일반 제조업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준설선 등의 경우 조선업 선박건조수리업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함. 특수 건설기계의 경우도 각종 다양한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함. 이에 건설현장으로 특정하여 안전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안전분야 보호조치를 포괄하지 못함.</li> <li>- 대부분의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특정 조치를 열거하여 적용하는 것 보다, 전면 적용을 하는 이 필요함.</li> </ul>
<p>캐디 (영 제73조제4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장에서의 재해 예방: 작업시작 전 관리감독자의 점검, 휴게시설·수면장소 등 설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신발을 착용하였는지 확인 및 지시</li> <li>2. 카트에 의한 재해 예방: 차량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탑승 금지, 기계운전시 위험방지 조치, 제한속도 지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용도 외 사용제한, 허용하중 초과 제한, 구내운반차 제동장치 구비 등</li> <li>3. 고객용대근로자 보호조치: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의 제공,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li> </ol>
<p>민주노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도의 방지. 채광 및 조명, 조도, 작업장 출입구, 비상구, 통로, 전용 보호구,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추락의 방지. 개구부등의 방호조치, 이동식 비계 등의 기준 적용이 필요함</li> <li>- 골프장 및 일반 사무 공간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됨</li> <li>- 타구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헬멧을 사용하는 사업장도 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차양이 넓은 모자와 경량 헬멧으로 자외선 보호와 타구에 의한 보호를 하고 있음</li> <li>- 옥외작업으로 현장에서 가장 높은 요구는 미세먼지 대책이며, 마스크 착용, 목에 거는 공기 청정기 등의 요구가 있으며,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국민 청원도 진행 중임.</li> <li>- 타구사고에 대한 예방으로 무릎 보호대의 경우도 검토 필요</li> <li>-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현재히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 적용. 현장에서의 혼선이 생기므로, '현재히 건강장애가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등의 문구 삭제 하여야 실질 적용됨.'</li> </ul>

<p>택배 (영 제73조제5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물건분류 시 재해 예방: 전도방지, 안전하고 적정한 높이의 작업발판,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조건,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위험물 등의 보관, 기계운전 시 위험방지 조치, 차량 제한속도 지정,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 차량의 전도방지를 위한 유도자 등 배치, 화물 적재 시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등 이송 시 전도 등 위험방지조치, 신거나 내리는 작업 시 조치허용하중 초과 제한, 비상정지장치, 트롤리 컨베이어 사용시 확실하게 연결하여 사용,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 위험 방지조치, 중량물 취급 시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화물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등 상·하역 시 조치, 근 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li> <li>2. 물건배달 시 재해예방: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li> <li>3.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의 제공</li> </ol>
<p>민주노총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식 비계, 휴게시설, 세척시설, 수면장소의 설치, 구급용구 필요</li> <li>- 고장난 기계의정비. 정비등의 작업시 운전 정지.</li> <li>- 택배 작업의 경우 지게차 작업과 통상 같이 진행되므로, 지게차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함.</li> <li>-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차량 운전작업에 해당되므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필요</li> <li>- 감정노동 보호조치는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전면 적용이 필요함.</li> </ul>
<p>퀵서비스 (영 제73조제6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륜자동차 이용 시 재해 예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 업무에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li> <li>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의 제공</li> </ol>
<p>민주노총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시설,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제한 필요</li> <li>-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차량 운전 작업에 해당되므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필요</li> <li>- 감정노동 보호조치는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전면 적용이 필요함.</li> </ul>
<p>대리운전기사 (영 제73조제9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을 제공</li> </ol>
<p>민주노총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조항이 감정노동 대응지침 제공 외에는 없는 상황임.</li> <li>- 야간 노동이 많으므로 수면장소 제공, 휴게시설 등이 필요함</li> <li>-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제한</li> <li>-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 차량 운전 작업에 해당되므로, 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조치 적용 필요</li> <li>- 감정노동 보호조치는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에 대한 전면 적용이 필요함.</li> </ul>
<p>사업주 정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1조 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와 근로자의 정의를 별도로 하고 있으나, 이는 법에서 이미 규정된 조항으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별도 규정할 필요 없음</li> <li>- 실제로 동일 현장에서 계약상의 문제로 동일 직종의 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할 경우 안전조치, 보건조치 적용 사업주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게 됨</li> <li>- <u>이에 이 조항은 삭제 되어야 함</u></li> </ul>

- 노동부는 특수고용 직종별로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특정하겠다는 입장임
  - 현행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직종별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안전보건조치를 분리 규정하는 것을 불가능함.
  - 현행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670조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함.
  
-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필요한 직종을 대상으로 별도의 규칙 제정에는 찬성. 차등적용 반대
  - 현행의 감정노동 보호 조치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규정이 별도로 필요함.
  - 현재 입법예고안은 직종별로 감정노동 보호조치를 차등적으로 적용 규정하고 있음. 실질적으로 골프장 경기 보조원 외에는 지침 제공 외에는 실질 적용이 없음
  -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차등 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함.
  -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도 ‘현저히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현장에서 혼란을 유발하고, 사업주의 다양한 편법과 강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이 조문은 삭제되어야 함.
  
-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1조 7항 : 반대. 삭제되어야 함
  -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
  - 현장에서 동일 작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가 혼재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와 같은 규정은 사업주에 대한 혼선으로 의무이행 공백상태로 귀결됨.
  - 법령에 이미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주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는 동 조문은 삭제되어야 함.

#### 4)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적용확대 (시행령 별표 1) : 시행령 별표 전면 개정

##### (1) 공공행정, 교육 서비스업 전면 적용

- 원청 책임 조항을 적용제외를 삭제한 것은 찬성함.
- 입법예고안은 공공행정의 경우 행정사무를 제외하고,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교원과 행정사무를 제외하고 있음.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이 필요함
- 사무행정이 사고 위험도가 낮으므로 산안법 일부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감정노동, 정신건강을 비롯한 각종 보건조치가 강화되고, 산안법상의 규제도 강화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임.
- 공무원의 경우 구제역 방역 작업, 재난 발생 시 긴급 작업, 폭설 시 보수작업 등 각종 현업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진행함. 그러나 사전에 안전교육에 대한 진행도 없음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과학 실험실 교사, 특수아동 돌봄 작업을 하는 특수 실무사 등이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별로 행정사무업무로 취급되고 있음. 교육청별로 각 직종에 대한 통합 노무관리가 확대되고 있어, 사실상 현업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행정사무로 분류

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이 다발하고 있음.

- 교육서비스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교원의 경우 그 대상이 모호함. 교사를 비롯하여 학교현장의 다양한 강사, 돌봄 노동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임.

## (2) 산안법 시행령 별표1 폐지

- 시행령 별표 1은 업종 및 규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모든 노동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가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 특히 산업구조의 변화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감정노동, 정신건강 및 직무 스트레스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나, 과거의 제조업,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중심의 사고로 안전보건의 기초적인 첫 걸음인 안전교육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전면적으로 적용제외하고 있어 반쪽짜리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일부 업종은 관련 산업의 법에 유사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적용제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관련법에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 내용이 없고, 감독기관도 없음. 그러나, 대부분의 업종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업종으로 산재를 방치하고 있는 것임.
- 특히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을 제외하는 것은 중복 규제 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노동자 건강 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대표적으로 방사선 취급업무가 일부 적용제외되고 있어 심각한 위험이 발생. 울산 조선업 비파괴 검사 노동자의 직업병 사망, 부산 녹산공단의 방사선 누출 등의 사례가 발생했으나, 법의 사각지대로 지금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선박안전법의 안전교육은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이며,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교육은 방사선 장해방지와 관련된 교육으로 제한됨.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같이 현재 시행령 별표 1의 일부 적용제외 대상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고, 시행령 별표 1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

## 5) 배달 노동자 중개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71조, 672조)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배달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후속 배달 요청이 수신되지 않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0분 배달제 폐지 등의 일환으로 2항과 3항이 도입. 3항 자체는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인지 불분명함. 2항은 배달중의 콜 수신을 막고 있어서, 배달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체계에 대한 현실 반영이 없는 상태임
- 이에 30분 배달제를 폐기하면서도 배달 노동자의 현실 노동조건을 반영하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개정 대안]**

1.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가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면허 및 제3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안전모의 보유 여부 확인
2.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산재를 유발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반영하는 등의 안전운행 조치

**3.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행규칙 71조, 72조) : 반대. 전면 개정**

**1) 동일 작업의 범위 명시**

○ 작업 중지 명령의 범위 중 ‘동일한 작업’ 이 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협소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음. 이에 반복적 재해를 막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작업중지 명령의 근본취지에 따라 동일 작업에 대한 범위를 하위 규정으로 명시하여야 함

**[개정 대안]**

- 시행령 (동일한 작업의 범위) 법 55조 1항 1호의 ‘동일한 작업’ 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종류의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
  2. 재해발생 작업과 동종 유사작업

**2) 작업 중지 해제 절차 : 해제운영기준의 내용을 규칙에 명시**

- 작업중지 해제 신청 ‘전 사업주의 안전조치 완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작업중지 해제 신청서식에는 [작업 중지 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완료하여 작업 중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다] 는 문구가 있고, 개선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이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유해위험 요인 개선 내용에 대한 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
  - 작업 중지 해제 운영기준에서는 작업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과반수 이상이 사업주의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해제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한 것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작업 중지 해제 이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전 확인 절차 반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규정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대책을 심의 의결 조항으로 하고 있음

법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재발방지 대책의 타당성과 이후 실질 이행을 위한 기구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임. 이에 작업중지 해제 절차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사업장은 산보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노동부가 작업 중지 해제 이전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함.

-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지)청장, 산재예방지도과장, 담당감독관, 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 중 2인 이상과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고,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심의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 과반수 이상(외부위원은 필수 참석)으로 하고, 대면심사를 통하여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 작업 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의견에 대한 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하므로, 4일 이내 회의 개최를 규정한 것은 삭제되어야 함
  - 외부 전문가가 서류만 보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 작업중지 명령의 해제 이후 근로감독관은 10일 이내에 현장에 출장하여 안전작업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감독관은 이행여부 확인 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참석 시키며, 별표\* 서식(근로자대표 또는 명감의 서명란 포함)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이후 1개월 간 안전작업 이행상황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주 1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표\* 서식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사업주는 이 보고 내용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

## [개정 대안]

- 제71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해제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개선 완료 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미리 유해·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 2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제72조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행여부의 확인에는 근로자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참여와 확인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작업 중지 해제 이후 1개월 간 안전작업 이행상황을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주 1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표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2조(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 ① 법 제55조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회는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로 개최하고,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

## 4.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성제출 제외대상 전면 재검토, 개별 노동자 정보제공 보장, 정보제공 의사 제한 삭제

### 1) MSDS 보고 제도

#### (1)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전면 재 검토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로 규정되어왔던 이유와 추가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 필요. 제외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관련 타 법의 규제가 있거나, 소비재 용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MSDS 제도의 노동자 알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R&D를 위한 실험 등의 경우 위험성이 높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는 심각한 노출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보고의무를 부여해야 하고, 현행의 입법예고 기준보다 강화하여야 함.

## (2)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10년간 보관 필요

## 2) 영업 비밀 제한

-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심사승인기구에 민간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공단에 위임되어 있으면서, 민간참여 보장 명시적 규정 없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되어야 함.
- 정보 공개 대상에 개별 노동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로 규정되어 있어, 범위가 제한적임
- 개별 노동자 참여 보장 하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당사자 진료로 한정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 보완이 필요함.

## 5. 기타 조항

###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 건설업의 경우만 시공능력 기준으로 원 하청 노동자 포함 대상 산정
- 조선업의 경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선업의 수주실적 혹은 매출 실적등으로 추가 규정 필요
- 이사회 보고 내용에 적정인력 보장 문제,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계획 반영

### 2) 산재신청 역학조사 참여에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요구 미 수용

- 참여범위가 대리인으로 되어있음. 산재신청에 대한 역학조사로 안전보건 전문가 참여 필요
-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직업병과 화학물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나 법률적 대리인 (노무사, 변호사)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아. 참여 보장이 형식적 절차로 실질 효과가 없는 경우가 다발함
- 역학조사 참여에 신청인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추가 되어야 함.
- 전문가는 직업환경의학의사 등 해당 상병 전문가, 산업위생기사, 산업안전기사, 기술사,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 3) 재해율 기준 산재다발 사업장 공표 삭제 : 반대

- 현행에 있었던 재해율 기준 공표대상을 삭제함.

- 보건관리, 직업병 등에 대한 사업장의 관리 약화로 귀결될 것임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정안 수정 보완)

- 해당사업의 대표자 : 같은 사업으로 다른 장소에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 본사와 여러 지점이 있는 경우 본사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 산보위 형해화 우려
- 전국단위사업장(또는 한 시도 내에서 동일한 업무영역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의 경우 지역사업장에서 경영권의 독립 즉, 채용을 비롯한 인사권과 독립적인 예산집행권한의 한계로 인해 사업장 위원회에서는 제한적인 안건만을 의결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현안을 해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전체 사업장의 인사, 예산 등 전체 자원을 통제하는 본사를 중심으로 중앙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장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해야 함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의견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사업의 종류)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7과 같다.	제3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사업의 종류) ①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별표 7과 같다. ② <u>동일한(연속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하나 이상의 시도에 복수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로 중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신설)</u>

5) 49조 안전보건 진단 및 개선 계획 수립 : 2배 이상 삭제

- 법에는 ‘재해율이 높은’ 으로 되어 있으나, 시행령에서 2배 이상으로 규정. (조문위임된 바 없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 휴업3이상에서 요양4일로 환원

- 산업재해 보고가 휴업3일 이상으로 개정 이후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상재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출근을 강요하고 있어,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 현재 휴업3일 이상의 보고제도는 도입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있으나, 제도 정착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산재신청과 보상 통계에도 못 미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
- 산재발생 보고제도의 현장 정착과 산재노동자에 대한 출근강요로 인한 적정치료 보장 형해화를 막

기 위해 요양4일로 환원되어야 함.

### 7)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 확대

- 사업장의 법 위반이 매년 90% 이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으나, 감독관의 1인당 담당 사업장 숫자는 감소에 한계가 있으며, 감독 대상 사업장의 무한정 확대도 불가능함
- 이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대상을 확대하고,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권한을 확대하여 사업장내에서 노동자 참여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
- 사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추천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기구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축소 해석을 하고 있어, 노동조합의 산재예방 활동을 위축 또는 방해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 [개정 대안]

<시행령>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간부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 1항 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위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의 업무로 한정한다.

③ 사업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8) 작업환경 측정대상,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변화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추가사항 필요
- 밀폐된 공간(예, 지하터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PM2.5, PM10) 추가

- 지하철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폐관련, 밀폐된 지하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폐관련 산재 인정 건수가 계속 늘어감  
- 지하철노동자 폐암 등 폐질환 직업병 다수 인정  
전체사업장, 주요사업장 대비 도시철도 종사자 직업성 천식, 폐질환, 폐암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2014년 ~ 2016

년에 의하면,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발생인원은, 전체사업장이 4.9명이고, 도시철도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0만 명당 산재발생인원은 9.3명으로 확인 됨

- 인천공항 수하물 운반노동자 폐암 인정(2019. 4월)

- 전차선으로 인한 전자파로 인한 건강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극 저주파 추가

업무로 인한 백혈병이라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두 번째 전기원 노동자가 나왔다. 23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전기원지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전기원 노동자 임모(63)씨의 백혈병이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앞서 임씨는 1995년부터 약 20년간 한국전력의 협력업체인 전기원에서 고압송전선로 활선작업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던 중 2004년경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됐다. 전기원 노조는 “직접활선 공법이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도입된 신기술인 직접활선 공법이란 낡은 전선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를 끊지 않고 시공하는 공법을 말한다. 2만2000V에 달하는 고압의 전기에 노출된 상태로 직접활선 공법을 시행할 경우 저주파 전자기장에 의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갑상선, 당뇨 등 각종 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대구에서 30년 이상 활선작업을 수행해온 조합원이 급성 백혈병에 걸리며 의혹은 더욱 기증됐고, 이후 한전은 노동자가 전선을 직접 만지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스마트스틱(Smart Stick) 근거리 활선공법을 개발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 미래형 첨단 활선로봇공법도 개발 중에 있다. 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 9)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추가 개정

### (1) 특수건강진단 개선위원회 설치

- 개정법 136조에는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이 도입되었음.

- 1997년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이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의 효과적 선정, 검사항목의 타당성 및 검사방법의 현실적 적합도가 현장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형해화된 대표적 제도로 지적되고 있음.

- 특수건강진단의 유해인자,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의 정기적 개선작업과 이를 통한 제도 효율성의 강화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개선위원회(가칭)의 설치가 필요함.

### [개정 대안]

#### 제 조(특수건강진단 개선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유해인자,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의 정기적 개선작업과 지속적 개발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특수건강진단 개선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2)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 전문기관 : 시행규칙 14조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보건관리 제도가 있으나,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방

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 건설업, 청소, 시설유지, 병원, 급식조리 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이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으나, 예방사업의 구체적 방안은 없으며, 간헐적 연구와 조사가 진행되고 제도개선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이에 업종별, 유해인자별 보건관리의 경우에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조사, 연구, 제도개선을 이루어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행규칙에 <근골격계 질환 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규정해야 함

### (3) 산업보건의 권한 직무 명시

- 사업장의 실질적인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산업보건의 제도를 활성화 하고,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시행규칙 신설

영 제 2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하며, 산업보건의는 각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조언하고, 필요시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1. 현장 점검을 통한 직업병과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 조치
2.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과 업무관련성 평가
3. 재해 근로자의 업무복귀에 관한 조언, 지도
4. 근골격계 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5. 직무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질병의 예방조치
6.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의 기획과 평가
7.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10) 시행령 5조 4항 무재해 운동의 삭제

- 사업장 무재해 운동은 장기간 동안 산재은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그동안 무재해 운동과 관련된 각종 상벌제도도 폐지되어 왔고, 민주노총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무재해 운동 사업도 폐지 되었음
- 그러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무재해운동을 빌미로 산재은폐를 강요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
- 이에 무재해 운동 사업을 삭제하여야 함.

## 6. 기타 개정안 중 찬성 의견

- 허용기준 대상 물질 확대 : 전면 적용되어야 함.
- 화기 감시자 배치 기준 : 제출된 기준을 인력기준으로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필요
- 물질안전보건자료 적용 : R&D 사업의 경우 실험실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의 문제는 일반 노동자보

다 훨씬 심각하므로 반드시 적용 필요함.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업주 이행조치 노동부 보고제도 도입 : 각종 보건관리제도의 형해화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 될 수 있는 단초로 찬성함

## 7. 추가 의견

### 1) 조선업 산안관리비 하위 규정 제정

- 2017년 중대산업재해 대책 발표에서 조선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위 규정 제정 발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 규정이 없어 실행되지 않음
- 하위 규정과 고시에 대한 검토와 노사의견도 제출되어 있으나, 노동부 추진 없음.

### 2)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보고서 하위규정 시급히 제정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주요 예방제도인 공정안전보고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사항임에도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많으나, 감독되지 않음.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2018년 관련 규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위험성 평가제도에 노동자 참여 보장이 법 개정되었으므로, 노동자 참여보장 현실화를 위한 하위규정 개정 방안이 제출되어야 하나, 제출되지 않고 있음

### [개정 대안]

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
- 중략-
②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③ 사업주는 제 1,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중략-
⑥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 또는 당해 작업 근로자의 위험성 평가 참여 혹은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교육등에 소요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 (신설)